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7 선고 2019가단122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9. 8. 27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,848,851원 및 그 중,가. 224, 339, 159원에 대하여는 2016. 1. 23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나. 408,639,644원에 대하여는 2008. 12. 24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9%의,그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2019. 6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%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,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3. 일부기각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‘소촉법’ 이라고 한다)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에 관한 규정이 2019 . 5. 21. 개정 공포되어 2019 . 6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, 2019 . 6.1.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%가 되었으므로,2019. 6. 1.부터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,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함.

판사 김상근

별지